

자원봉사자 우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12. 9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1. 11. 16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1. 11. 17.

다. 상정일자: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(2021.12.9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자치행정과장 김종오】

가. 제안이유

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1) 자원봉사자 공공시설 이용 우대를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안

연번	자치법규명	개정 내용	비고
1	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	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20% 감면	조례안 제1조
2	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」	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사용료 할인	조례안 제2조
3	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	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사용료, 수강료 100분의 20 감면	조례안 제3조
4	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	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사용료 등 100분의 20 감면	조례안 제4조
5	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	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는 주차요금 100분의 20 할인	조례안 제5조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개정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(제1조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) 별표 2의 감면대상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와 감면비율 20%를 신설하는 내용임.
- (제2조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」) 제13조의3제1항의 제17호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를 신설하는 내용임.

- (제3조 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) 제 11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는 개인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임.
- (제4조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) 제7조제3항에 제7호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는 100분의 20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임.
- (제5조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) 별표1에 제26호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임.
- 본 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의 공공시설 이용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 정비대상인 자치행정과, 문화예술과, 생활체육과, 아동청년과, 교통지도과 등 5개 부서에 해당하는 조례를 별도로 개정할 경우 입법절차의 비경제성·비능률성이 우려되어 일괄 개정하는 것임.
- 또한,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의 기여와 저변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요지: 없음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8. 기타: 없음

【참고자료】

○ 연도별 자원봉사 100시간 이상 마포구 자원봉사자 수

연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 9월
100시간 이상 봉사자(a)	1,170명	1,013명	414명	241명
주민등록인구(b)	375,077명	374,035명	371,890명	369,903명
비율 (a/b*100%)	0.31%	0.27%	0.11%	0.07%

○ 공공시설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액 전망

- 2019년 기준 예상 세입 감소액 연 10,951천원

시설명 (담당부서)	이용요금 내용	'19년 세입징수액(천원)	감면적용 시 세입감소분(천원)
구청사 부설주차장 (총무과)	주차요금	117,418	70
자치회관 (자치행정과)	대관료	37,125	2
마포아트센터 (문화예술과)	대관료	436,070	262
	수강료	3,217,540	1931
청소년문화의집 (이동청년과)	프로그램 강습료	747,032	448
마포구민 체육센터 (생활체육과)	대관 등 사용료	856,728	514
	수강료	706,423	424
염리생활 체육관 (생활체육과)	대관 등 사용료	54,747	33
	수강료	378,078	227
성미산체육관 (생활체육과)	대관 등 사용료	91,938	55
	수강료	258,883	155
공영주차장 (교통지도과)	주차요금	11,383,929	6,830
합계		18,285,911	10,951

※ 세입감소분 계산식 : 2019년 세입징수액 * 20%(감면비율) * 0.3%(1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수/주민등록 인구수)